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28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서천호 · 김선교 · 조인철
김장겸 · 서일준 · 엄태영
임종득 · 신성범 · 김대식
강민국 · 신동욱 · 김재섭
김종양 · 윤영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 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진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우주산업의 진흥 및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한 지원 업무
4.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5. 항공우주산업 관련 장비·인프라의 구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6.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u> <u>립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u> <u>공우주산업의 진흥과 체계적인</u> <u>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산업진</u> <u>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u> <u>을 설립한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u> <u>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u> <u>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u> <u>을 둔다.</u> <u>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u> <u>무를 수행한다.</u> <u>1. 항공우주산업의 진흥 및 혁</u> <u>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u> <u>· 연구에 관한 사항</u> <u>2. 항공우주산업의 중장기 발전</u> <u>전략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u> <u>한 사항</u> <u>3.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u> <u>발,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에</u> <u>관한 지원 업무</u> <u>4.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인력양</u>

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5. 항공우주산업 관련 장비·인프라의 구축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